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가단51845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기훈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엽

2. C

변 론 종 결 2022. 1. 18.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피고 C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98,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98,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2. D과 사이에 수입육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수입육을 공급해 왔던바, 2019. 5. 22. 현재 D에 대한 2,309,829,567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합계 98,060,000원을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내지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피고 C이지 피고 B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D의 피고 C에 대한 송금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와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증여금 합계 98,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D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D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

별지 증여계약 목록

2019.02.12.	1,060,000		
2019.02.13.	10,000,000		1)
2019.03.14.	7,000,000	(우리은행)	보증증권수수료
2019.03.15.	40,000,000		보증료하곡동
2019.03.16.	10,000,000		보증수수료
2019.03.19.	30,000,000		보증수수료
합계	98,060,000		

